

접수일	접수자	별호사
9/16	30	한

서 울 지 방 법 원

제 2 1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00가합81304 손해배상(기)

원 고 1. 권영석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1115 셀마을 힙꽝아파트 303-1003

2. 김경열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목현마을 한신아파트 203-705

3. 김귀복

서울 양천구 신정1동 목동이파트 914-302

4. 김동옥

광주 서구 화정3동 750-11 서울빌라 301호

5. 김세희

광주 북구 중흥동 211-48

6. 김태환

광양시 금호동 메화아파트 9-305

7. 김현희

서울 은평구 구산동 147-6 황금빌라 B02호

8. 김희선

서울 중랑구 면목7동 투산아파트 302-2003

...
...
...

9. 남국갑

인천 남구 학익2동 신동이아파트 25-1003

10. 박경필

서울 중구 신당동 844 남산타운아파트 30-201

11. 박성수

고양시 억양구 화정동 858 동부아파트 118-402

12. 서중석

서울 종로구 가회동 11-38

13. 양문옥

부산 동래구 온천3동 1315-5

14. 이규환

서울 강남구 개포동 649 경남아파트 8-406

15. 이재길

서울 관악구 신림2동 108-53

16. 이화실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1115 셀마을 임광아파트 303-1003

원고를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명인

담당변호사 김석연

피 고

1. 동양종합금융증권 주식회사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3-8

대표이사 박중진

2002. 6. 16. 4:44:27

2. 박중진

서울 강남구 도곡동 201 인정프린스빌라 101호
위 피고를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남산
담당변호사 임동진, 하민호, 정미화, 박종연

3. 삼일회계법인

서울 용산구 한강로2가 191 국제센터빌딩
대표이사 서태석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법률
담당변호사 홍지숙, 이영희

변론 종결 2002. 7. 25.

판결 선고 2002. 8. 29.

주 문

-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들에게 별지 현황표 '청구금액'란 기재 해당 금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최후송달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리를 기급하라는 판결.

...
...
...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갑 1 내지 3호증, 갑 4호증의 1, 2, 갑 5호증, 갑 6호증의 1 내지 16, 갑 7호증의 1 내지 5, 갑 8호증, 갑 9호증의 1, 2, 을가 4호증의 1 내지 4, 을가 5호증의 1, 2, 을다 2호증, 을다 3호증의 기재와 이 법원의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언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빙하는 을다 10호증의 기재와 증인 전홍, 김인천의 증언은 이를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피고 동양종합금융증권 주식회사(이하 '피고 동양종금'이라고 한다.)는 제27기 회계연도(1998. 4. 1.부터 1999. 3. 31.까지) 동안 역외펀드인 Reesin International Limited 와 Valport Investment Limited에 대한 외화대출금 미화 55,620,000달러 중 미화 33,668,239 달러(결산일인 1998. 3. 31. 기준 원화로 환산한 금액 41,233,492,303원)의 회복할 수 있는 손실이 발생하자, 이를 운제하기 위하여 네덜란드의 라보운행(RABO Bank)이 설립한 신규 역외펀드(Orient Fortune Holdings Ltd., 이하 'OFH'로 줄여 쓴다.)에 이 부실외화채권을 매각하는 한편, 라보운행이 OFH 발행의 P note에 연계(credit link)하여 발행한 액면가 합계 미화 5,000만 달러 상당의 증권(이하 '라보증권'이라고 한다.)을 매입하였는바, 피고 동양종금은 구 기업회계기준 제56조(1996. 12. 27. 시행) 및 종합금융회사 98회계연도 결산기록(감독증 6117-292, 1999. 3. 31.)에 의하여 현저한 시가하락 요인이 있는 시장성 있는 유가증권에 해당하는 라보증권에 대하여 종합금융회사 자산진전성분류기준에 따라 일정한 수준의 예손충당금을 적립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1999. 4.경 제27기 회계연도의 재무개표를 작성하면서 라보증권을 장부가로 평가하여 그대로 외화유가증권 계정에 계상함으로써 실제로는 당기순손실이 최대

16,157,401,637원까지 발생하였음에도 손익계산서에 당기순이익 25,076,080,666원이 발생한 것으로 기재하였다.

나. 피고 삼일회계법인은 피고 동양종금과 사이에 체결한 1997. 7. 29.자 외부감사계약에 따라 1999. 4. 12.부터 1999. 4. 17.까지 피고 동양종금의 제27기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후 1999. 4. 17.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였는바, 피고 삼일회계법인은 감사를 실시하면서 피고 동양종금이 제출한 과보증권에 관한 계약서(Offering Circular)를 충분히 검토하지 아니한 잘못으로 과보증권이 OFH가 발행한 P note와 연계되어 있어 예면가로 계상할 수 없다는 사실을 간과하여 이를 지적하지 못한 채, 감사보고서에 "본 감사인의 의견으로는 상기 재무제표는 동양종금의 1999. 3. 1. 현재의 재무상태와 동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경영성과 그리고 이익잉여금의 변동과 현금흐름의 내용을 종합금융회사에 관한법률 등 관계법규, 금융감독원 결산지침 및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라는 내용의 감사의견을 표시하였다.

다. 피고 동양종금은 1999. 4. 29. 이사회에서 기명식 보통주식 700만 주를 유상증자하기로 결의하고 금융감독위원회에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였고, 1999. 5. 14. 주주총회에서 제27기 회계연도의 재무제표가 확정되자, 1999. 5. 17. 금융감독위원회에 제27기 회계연도의 재무제표의 내용이 기재된 유가증권정정신고서를 제출하였으며, 이 유가증권정정신고서에 기초하여 유상증자를 실시하였는바, 원고 서중석, 김동욱은 1999. 6. 24. 신주인수율 청탁하여 원고 서중석은 신주 287주를, 원고 김동욱은 143주를 각각 주당 발행가격 6,300원에 취득하였다.

라. 한편 피고 동양종금은 1999. 6. 29. 재무제표가 포함된 제27기 회계연도의 사업보고서를 첨부서류인 제27기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와 함께 금융감독원과 증권거래

소에 제출하였고, 이 서류들은 그 뒤로 일반인에게 공시되었다.

마. 원고 서증석, 김동욱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1990. 6.경부터 1999. 11.경까지 피고 동양종금이 발행한 기명식 보통주식(일부 우선주식 포함)을 별지 현황표 기재와 같이 증권거래소를 통하여 취득하였다.

마. 증권선물위원회는 1999. 12. 28. 피고 삼일회계법인이 피고 동양종금의 제27기 회계연도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대차대조표일 현재 모든 자산과 부채는 적정한 가액으로 평가되었는지를 확인하고 회계주체에 대한 합리성을 검토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회계감사기준(1994. 12. 14. 개정된 것) 제16조 제4호 및 회계감사준칙(1994. 12. 30. 개정된 것) 354-(2)-나-④에 위반하여 피고 동양종금이 외화대출금에서 발생한 손실 412억 3,300만 원의 손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매입한 라보증권을 정상 외화유가증권으로 계상하여 시가평가를 하지 않은 사실을 지적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고 삼일회계법인에 대하여 각시제출요구, 특정회사 감사업무 제한 1년 및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납부 10%라는 제재조치를 취하였고, 이와 같은 사실은 1999. 12. 29. 일간신문에 보도되었다.

2. 원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 동양종금, 박중진에 대한 청구에 대한 판단

(1) 증권거래법 제14조 제1항 제1호, 제186조의 5에 의하면, 유가증권신고서나 사업보고서 중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의 기재가 있거나 중요한 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함으로써 유가증권의 취득자가 손해를 입은 때에는 유가증권신고서나 사업보고서상의 신고자 또는 개표자와 신고, 제출 당시 당해 법인의 이사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바, 위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유가증권정정신고서와 사업보고서에 위와 같이 순이익이 최대 41,238,492,303원 과대계상된 재무제표의 내용이 기재된

것은 그 금액에 비추어 합리적인 투자자라면 주식의 거래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는 데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어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해위기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유가증권정정신고서와 사업보고서의 신고자 또는 제출자인 피고 동양종금, 그 신고, 제출 당시의 이사인 피고 박중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유가증권정정신고서 또는 사업보고서를 신뢰하고 피고 동양종금은 행한 주식을 취득한 원고들에게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피고 동양종금, 박중진은, 원고들이 피고 동양종금이 발행한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입은 손해는 이 사건 유가증권정정신고서와 사업보고서의 해위기재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증권거래법 제15조에 의하면, 유가증권신고서 또는 사업보고서의 해위기재로 인하여 배상할 금액은 유가증권을 취득하면서 실지로 지급한 금액에서 변론종결시의 시장가격 또는 변론종결 이전의 처분가격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되, 그 배상책임을 질 자가 그 손해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해위기재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님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치지 아니하는 바, 올가 1호증의 1 내지 9, 올가 2호증의 기재와 이 법원의 한국증권거래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종합하면, 피고 동양종금의 주가는 1999. 5. 10. 주당 10,150원의 종가를 기록한 것을 정점으로 하여 2000. 12. 말경까지 소폭의 등락을 거듭하면서 종합금융업종 지수에 동반하여 계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에 있었는데, 이 사건 유가증권정정신고서가 공시된 1999. 5. 17.에는 7,910원, 그 다음날에는 7,950원으로서 각각 전일 대비 1.41%, 0.51%↓ 상승하였고, 이 사건 사업보고서가 공시된 1999. 6. 29.에는 7,400원, 그 다음날에는 7,170원으로서 각각 전일 대비 4.64%, 3.11%↓ 하락하였던 사실, 금융감독원의 재체조치 전일인 1999. 12. 27.에는 3,650원이던 주가가 재체조치일인 1999. 12. 28.에

는 3,700원(전일 대비 1.37% 상승), 그 다음 영업일인 2000. 1. 4.에는 3,900원(전일 대비 5.41% 상승), 2000. 1. 7.에는 3,850원(전일 대비 10.95% 상승), 2000. 1. 10.에는 4,420원(전일 대비 14.81% 상승)으로서 피고 동양종금의 제27기 재무제표에 허위기재가 있었다는 사실이 일간신문에 보도되어 일반인에게 널리 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제재조치 전일인 1999. 12. 27.부터 2000. 1. 10.까지 사이에 21.09% 상승한 사실, 그 무렵 종합금융업종의 지수는 1999. 12. 27.에는 103.76, 1999. 12. 28.에는 107.5(전일 대비 3.6% 상승), 2000. 1. 4.에는 116.87(전일 대비 8.72% 상승), 2000. 1. 7.에는 118.2(전일 대비 12.00% 상승), 2000. 1. 10.에는 132.75(전일 대비 12.31% 상승)로서 제재조치 전일인 1999. 12. 27.부터 2000. 1. 10.까지 사이에 27.93% 상승하여 피고 동양종금의 주가 상승률을 초과하였으나, 2000. 1. 20.의 피고 동양종금의 주가는 3,680원, 종합금융업종의 지수는 94.44로서 피고 동양종금의 주가는 1999. 12. 27. 대비 0.82% 상승, 1999. 12. 28. 대비 0.55% 하락하였음에 반하여 종합금융업종의 지수는 1999. 12. 27. 대비 8.93%, 1999. 12. 28. 대비 12.15% 하락하여 피고 동양종금의 주가 하락율을 초과한 사실, 또 2000. 1. 31.의 피고 동양종금의 주가는 3,700원, 종합금융업종의 지수는 92.9로서 피고 동양종금의 주가는 1999. 12. 27. 대비 1.36% 상승, 1999. 12. 28. 대비 0% 상승하였음에 반하여 종합금융업종의 지수는 1999. 12. 27. 대비 10.47%, 1999. 12. 28. 대비 13.59% 하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이 피고 동양종금의 주가가 제재조치 당일과 그 다음 영업일에도 상승하였고, 그 이후 약 10일간은 주가 상승률이 종합금융업종 지수의 상승률에 약간 미달하였으나 약 1개월간은 종합금융업종 지수가 10% 이상 하락하였음에도 제재조치일 또는 그 전일의 주가 수준을 유지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 동양종금의 주가가 허위기재된 유가증권정정신고서, 사업보고서에 기초하여

형성되었다가 허위기재 사실이 밝혀짐으로 인하여 하락하였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들이 피고 동양증권의 주식을 취득한 기간보다 낮은 가격으로 처분하거나 그대로 보유하고 있음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는 이 사건 유가증권정정신고서와 사업보고서의 허위기재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어, 원고들의 피고 동양증권, 박중진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나. 피고 삼일회계법인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피고 삼일회계법인은 증권거래법 제14조 제1항 제2호, 제196조의 5에 의하여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는바, 증권거래법 제14조 제1항 제2호는 유가증권신고서에 허위기재가 있는 경우 당해 유가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가 진실 또는 정확하다고 증명하였거나 서명한 공인회계사, 감정인 또는 신용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자도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회계법인이 그 조항에 열거된 '공인회계사, 감정인 또는 신용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자'에 포함된다 고 할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가령 기기예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들이 입은 손해가 이 사건 유가증권정정신고서와 사업보고서의 허위기재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할 수 없는 이상 원고들의 피고 삼일회계법인에 대한 청구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손태호

2002. 9. 17. 11:17

판사 황정수 _____

판사 이재온 _____